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6회 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5. 6. 1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5. 5. 23.
- 회부일 : 2025. 5. 23. (의안번호 : 25-50)

2. 제안이유

-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마포소방서 요청사항 및 소관사항, 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정의 추가 등(안 제2조 제1호)
- 소방 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입법예고: 2025. 4. 17. ~ 5. 7.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마포소방서 요청사항 및 소관사항, 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① 조례의 개정 취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의 명확화를 통해 조례의 적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② 주요 개정내용

○ 법령 정비 및 용어 수정

- 제1조: 상위법령 명칭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10조 인용으로 정비)

○ 지원대상 확대 및 조문 신설

- 제2조 제1호 다목: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로
조문 구체화
- 제2조 제1호 마목 신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확대

○ 위원회 명칭 정비

- 제8조: "위원회 · ·)" 표현을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여
문장 명확화

○ 위원 구성 및 표현 정비

- 제9조 제3항: 위원 구성에 "실뿌리복지과장" 추가
- 제9조 제3항 제1호: "재난관리과장"을 "예방과장"으로 수정
- 제9조 제3항 제2호: "마포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장"을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으로 수정
- 제9조 제3항 제4호: "소방에 관련한"을 "소방 및 화재
관련"으로 명확화

③ 개정내용 검토

-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
위원회 구성 및 명칭의 명확화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의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화재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마포소방서 요청사항 및 소관 사항,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조례 운영에 있어 명확성과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 등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능과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구조, 수용 인원 또는 물품의 저장·취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 등의 성능이 향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